

제284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79 호
- 제 출 자 : 정 해숙 의원 외 8명
- 제 출 일 : 2021. 8. 23.
- 회 부 일 : 2021. 8. 26.

2. 제안이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수정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탈북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 확장(안 제2조, 안 제5조)

구분 용어	기존	개정(안) (제2조, 제5조)
어린이의회 (참여대상)	초등학교 5~6학년생	만11세~12세 또는 초등학교 5~6학년 미취학·다문화·탈북 어린이 등
청소년의회 (참여대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 인 학생	만13세~만18세 청소년이거나, 중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 미취학·다문화·탈북 청소년 등

나. 의원의 정수 조정 (안 제3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4조)
의원정수	어린이·청소년 의원 각각 55명 이내	어린이·청소년 의원 각각 30명 내외

다.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체적인 기능 신설(안 제3조제2항)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3조제2항)
의회기능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모의회의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라. 의장단 구성과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8조)
의 장 단 선출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 부의장은 의장선거 후 동일한 방법

마.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전체회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8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9조)
상임위원회 명칭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의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함.

바. 어린이·청소년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실질적 지원방안 추가 (안 제12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12조)
의원에 대한 지원	- 배지 등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u>의원들이 의회 운영방식·안전제안·안전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육</u> - 배지 등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¹⁾, 「초·중등교육법」 제2조²⁾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의안공고 : 2021. 8. .

- 1)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5. 검토의견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과 현행 조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참여대상에 있어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을 미취학 학생이나 다문화·탈북 청소년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모의회의를 체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정책·예산과 관련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입법과 관련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참여권을 확보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정된 몇 개의 상임위원회 중 희망하는 1곳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스스로 현안 사항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롭게 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였음.

무엇보다도, 의회의 운영방식과 안건이 주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명시하여, 향후 어린이·청소년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을 벗어나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